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

2026. 1. 2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주요 수정사항

(※기타 수정사항은 수정 공고문 참고)

표.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구분	1차 공고	수정 공고
공고문 (1p)	○ 신설	○ 수정공고 적용시기 기재 《1차 수정공고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최초공고 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38p)	○ 신설	○ 보조금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이 연중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구 기입 ○ (기타사항)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은 공단 보조금 지급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신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보조금 지급기준 (보조금액 산정) 변경 (42p)	○ 하도급업체인 경우 지원불가(원도급 업체만 지원가능)	○ 하도급업체 지원불가 문구 삭제 및 하도급업체에 지원 기준 추가 ①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조건표 금액의 47% 지원 - 시스템동바리는 산정된 보조금액의 47% 지원 - 낙하물방지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는 100% 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42p)	○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및 인정조건으로 문구 변경 ○ 안전방망 및 시스템동바리에 대한 조건 추가 - [안전방망] 신문에 한하여 지원 - [시스템동바리] 공사비 내역에 시스템동바리 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낙하물방지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3)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 산품에 한하여 지원(재사용품 불가) 시스템동바리 ①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② 시스템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한 상하 이동을 위한 통로 설치 ※ 보조금 신청 대상 시스템동바리가 공사비 내역에 없는 경우에 한함

목 차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7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63
Ⅳ.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135
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	159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정 공고 2026. 1. 29

(최초공고 2025. 12. 31)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차 수정공고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최초공고 기준에 따름》

II.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등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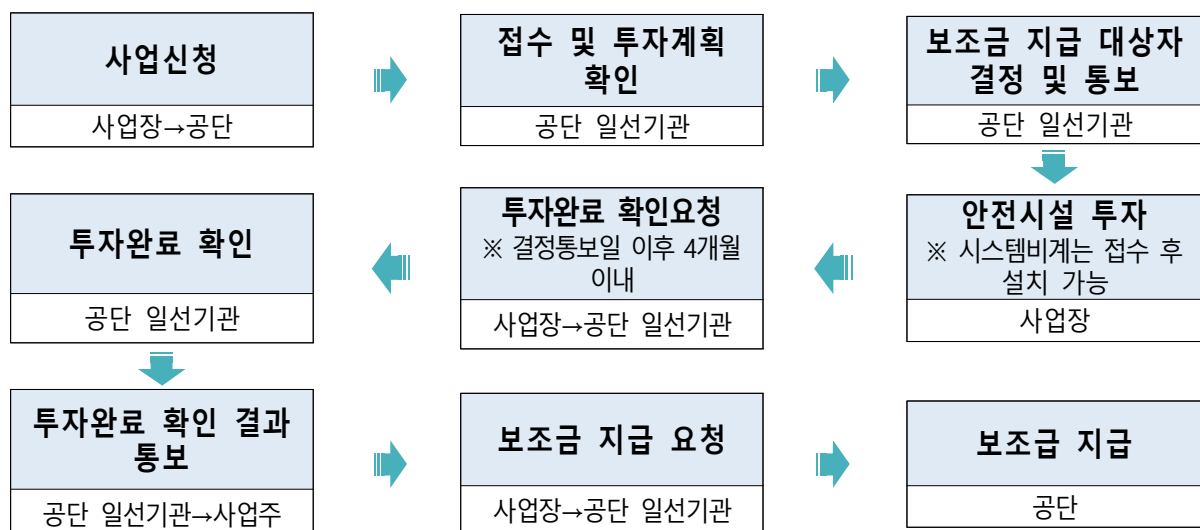
- ※ 현장 당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지원한도(9천만 원)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 가능
- ※ 당해연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보조한도 내 운영(기 지급 보조금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1]

품 목	대상설비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시스템동바리	수직·수평·가새재, U헤드 잭, 받침철물 및 부속품 등 일체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시 지원불가

○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기타사항)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은 공단 보조금 지급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신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53,467백만원
 -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자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관할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 방문) 또는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건설업 산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투자를 완료하고,
 -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보조금 지급 품목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나, 시스템비계의 경우에는 공단 일선기관에서 보조금 접수 후 선투자(설치) 인정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 (확인요청) 보조 지원품목 임차설치 등 완료 후, 공단의 확인을 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9. 기타사항

-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관련법규)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30호)

첨부 1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

지원품목별 보조금액 산정

구분	보조금액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방호선반)	임차·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안전대 부착설비	신청 수량당 정액 지급
①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조건표 금액의 47% 지원 - 시스템동바리는 산정된 보조금액의 47% 지원 - 낙하물방지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는 100% 지원	
②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③ 정액 보조금 및 공단 판단금액은 소요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안전대 부착설비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타 품목과 연계하여 신청가능 함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및 인정조건

구분	설치기준 및 인정조건
시스템비계	① 건축물 4면에 작업발판 2열로 시스템비계 설치 ② 승강계단 1개소 이상 설치(건물외주(4면) 길이 50m 이상 마다 1개소 추가설치) ③ 시스템비계 내측 작업발판과 구조물의 이격거리 30cm 이하 (30m이상으로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 하체가 필요한 경우, 캔탈레버 형태의 작업발판 등을 추가 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상기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단(일선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완화하여 설치 가능함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낙하물방지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3)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 신문에 한하여 지원(재사용품 불가)
사다리형 작업발판	①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다리 ② 작업높이가 최대 3.5m 이하인 S마크 인증품
시스템동바리	①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② 시스템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한 상·하 이동을 위한 통로 설치 ※ 보조금 신청 대상 시스템동바리가 공사비 내역에 없는 경우에 한함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 매립 부분 및 지지로프의 최소파단 강도: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고정철물 및 전산볼트 연결되는 콘크리트 매립 앵커의 최소파단강도: EN(유럽표준), ANSI(미국 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조건표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건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건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4,050㎡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 이상	3,000㎡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 이상	3,150㎡ 이상

낙하물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지원비율	65%	50%

○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단가(원)	비고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m ²	3,700	7,400	11,100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m ²	12,000	8,000	20,000	-신품 설치에 한하여 지원 - (플라잉넷) 사다리: 폭 30cm 내외 × 길이 2m이상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개	1.5~2.5m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 (S마크) 제품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 시스템동바리 단위체적(m³)당 표준단가(부가세별도) 조건표

○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지원비율	65%	50%

○ 해당 규격별(설치 높이, 설치 간격) 표준단가

[단위: 원]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1m이하	2m이하	3m이하	4m이하	5m이하	6m이하	7m이하	8m이하	9m이하	10m이하
1	0.6m 이하	15,200	15,600	15,900	16,200	16,600	16,900	17,200	17,500	17,900	18,200
2	0.6m 초과~1.2m 이하	12,700	13,000	13,300	13,500	13,800	14,100	14,400	14,700	14,900	15,200
3	1.2m 초과	11,400	11,700	11,900	12,200	12,400	12,700	12,900	13,200	13,400	13,700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11m이하	12m이하	13m이하	14m이하	15m이하	16m이하	17m이하	18m이하	19m이하	20m이하
4	0.6m 이하	18,500	18,900	19,200	19,500	19,900	20,200	20,500	20,800	21,200	21,500
5	0.6m 초과~1.2m 이하	15,500	15,800	16,100	16,300	16,600	16,900	17,200	17,500	17,700	18,000
6	1.2m 초과	13,900	14,200	14,400	14,700	14,900	15,200	15,400	15,700	15,900	16,200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21m이하	22m이하	23m이하	24m이하	25m이하	26m이하	27m이하	28m이하	29m이하	30m이하
7	0.6m 이하	21,800	22,200	22,500	22,800	23,200	23,500	23,800	24,100	24,500	24,800
8	0.6m 초과~1.2m 이하	18,300	18,600	18,900	19,100	19,400	19,700	20,000	20,300	20,500	20,800
9	1.2m 초과	16,400	16,700	16,900	17,200	17,400	17,700	17,900	18,200	18,400	18,700

○ 보조금액 산정방법

- 구간별 시스템동바리 설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조건표상에 각각의 해당 규격(설치 높이, 설치 간격)에 대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 소요비용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을 적용

$$\text{※ 보조금(원)} = \text{설치체적(m}^3\text{)}^* \times \text{시스템동바리 표준단가(원)} \times \text{보조지원비율}$$

* 설치체적(m³) = 시스템동바리 설치구간 바닥면적(m²) × 설치높이(m)**

** 표준단가 조건표의 설치높이 구간별 최대값 적용 ([예시] 설치높이 4.8m인 경우 5m 적용)

안전대 부착설비[부가세별도] 조건표

-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공사금액 구분 없이 신청 수량당 보조금 정액 지급

[단위: 원]

설비명	단위	구분	보조금(정액)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개	슬래브 매립형 안전걸이	5,000
		하부고정판	500
		막음재	500

※ 해당 설비의 이미지는 [첨부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상세현황 참고

-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공사금액에 따라 신청 수량당 보조금 정액지급

[단위: 원]

설비명	단위	보조금(정액)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개	17,500	13,500

※ 해당 설비의 이미지는 [첨부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상세현황 참고

첨부 2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서식)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융자금 지원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여)
	자택주소	(0000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자택전화	052-***-****	이동전화	010-****-****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홍길동 신축공사	사업장관리번호	588 - ** - ****		
	사업자등록번호	588-***-****	사업개시번호	920 - ** - ****		
	대표자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1*****		
	근로자수	00 명	회사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메일)	052-***-**** (현장소장 000 : 000-000-0000) (00000000@naver.com)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1,800,000,000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당 ☐ 비 해당		
	업종	건설업	FAX 번호	052-***-****		
	소재지	(000 - 000) 본사주소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000 - 000) 현장주소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30,000 천원	보조신청금액	20,000 천원		
	자체 부담금액	10,000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금 신청금액	천원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설업(예시)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 동바리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원)							
계	-	-							
시스템비계	1열 00산업	- 1,000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시스템비계	2열 00산업	- 1,000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00산업	- 1,000	100	-	100	50	50	202600.00.	202600.00.
안전방망	플라잉넷 00산업	- 1,000	50	-	50	25	25	202600.00.	202600.00.
사다리형 작업발판	높이 0m 00산업	2 1,000	-	-	50	25	25	202600.00.	202600.00.
시스템 동바리 (㎡)	0.6m이하/ 높이5m이하 00산업	- 1,000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시스템 동바리 (㎡)	0.6~1.2m이하 /높이4m이하 00산업	- 1,000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00산업	1 5	-	-	20	10	10	202600.00.	202600.00.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00산업	2 21	-	-	20	10	10	202600.00.	202600.00.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 비율을 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첨부서류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등 - (시스템 비계·동바리 및 안전방망) 평·입·단면도 등 설치면적 산출용 도면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공사 제외)	(양식1)
④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2)
⑤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3)
⑥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공사 제외)	
⑦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해당시
⑧ 지원품목 설치 현장 전경사진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해당시
⑨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⑩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⑪ 원·하청 도급계약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신청 시 해당)	해당시
⑫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양식10)

※ ② 임대·설치업체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가능

※ ③, ④, ⑤ 사업주 서명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 전자서명으로 갈음(보조금 신청서[첨부1], 투자계획서 포함[첨부2])

※ ⑦ 임대·설치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자에게 제공(임대·설치업체별 최초 1회 제출 하면 추후 생략 가능)

※ ⑨ 계약서 갑지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⑩ 보조금 신청 직전에 KISCON으로 신고한 건설공사대장

※ 산재보험 완납 여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등 상기 첨부서류 외 공단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6조제3항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항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공단→사업주) ➡
보조금 지급요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등)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제작·판매업체 등→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제작·판매업체등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서류 등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 **설치 및 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설치면적·수량 감소 시에는 투자계획변경 요청을 생략하고, **공단 투자완료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면적·수량으로 정산**합니다.

5. 보조금 지급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투자완료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보조금 지급신청 후 건설현장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될 경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조건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보조금 결정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② 지원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③ 보조금 지급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④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보조금 지급 후 발생 시 신청 제한기간 3년**)
- ⑤ 공단의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제17조제1항 관련)

재정지원번호		사업장명	
대표자(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 -	
현장명		공사금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소재지	()	현장담당자	☎ (- -)
확인 요청일	20 .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 이내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 내역					(단위: 천원)
품목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금회 확인요청품목	향후 확인 요청 예정일
총계					
시스템비계				☐	
안전방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동바리				☐	
안전대 부착설비				☐	

■ 투자완료 확인요청 품목 수량	
1	시스템비계 : 작업발판 1열 ()m ² , 작업발판 2열 ()m ²
2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m ² , 플라잉넷 ()m ² , 낙하물방호선반 ()m ²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개
4	시스템동바리 : ()m ³
5	안전대 부착설비 :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개,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설비별 임대·설치·해체·구입 계약서(사본) 각 1부.
2. 보조금 지급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00000 임대차(시공)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0000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공 사 명 :
2. 임대차 기간 : 20 . . . ~ 20 . . .
3. 계약 금액 : 원정
4. 공급 가액 : 원정
5. 부가가치세 : 원정
6. 납품장소 :
7. 별첨 : 00000 내역

20 . . .

※ 상기 계약서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필수 기재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임대·설치업체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름

임대인 “갑”

주 소 :
사업자번호 :
전화 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임차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이 름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17조제2항 관련)

■ 건설업

제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현장명		공사금액		천 원	
현장 소재지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제2항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 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사업주)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등) 사본 1부.
 3. 입금 증빙서류(전체 투자설비·공사 대금 및 부가세 입금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4. 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정보대장 사본 각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전ilter 조성지원 사업 선금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 . .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완료일자	20 . . .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스마트 안전장비(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지급보증보험: 보험기간은 공사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선지급 요청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함 ※ 공사기간 연장 시 지급보증보험 보험기간 연장된 공사기간 만큼 연장 필요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수수료 없음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렴의무 이행서약서(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방으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사업 참여배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주요내용

1. 재정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업무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3. 재정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비를 강요하거나 필요수량 이상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4. **안전조치 기준 및 투자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설비를 시공 또는 납품하지 않는다.**
5.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6.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 사업주 및 업무수행 당사자

○ 사업장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제작·판매업체등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을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서약자

- 사업장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주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원품목 상세현황

품목명	설비명	사진		보조금 구분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			정액보조금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정액보조금
	낙하물방지망			정률보조금
사다리형작업발판	사다리형작업발판			정률보조금
시스템동바리				정률보조금
안전대 부착설비	슬래브 매립형 안전대 결이대			정액보조금
	전산볼트 고정형 추락방지대			정액보조금

첨부 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①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②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①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②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④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⑤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페이백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	○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미사용의 경우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 투자완료 다음연도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수정여부 확인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될 경우 수정 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7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1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5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3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9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5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5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42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96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1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650-685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5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43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25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5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53